

#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852
----------	-----

2012년 6월 21일  
보건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결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2년 6월 10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12년 6월 12일 회부
- 다. 상정결과 :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 
(2012년 6월 21일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복지건강실장 김경호)

### 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치매센터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로서
- 민간 의료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## 나. 주요내용

### (1) 센터 개요

- 시설명 : 서울특별시 치매센터(2006. 12. 20)
- 소재지 :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445번지(4층)
- 시설규모 : 239.64m<sup>2</sup>
- 위탁법인 : 서울대학교 병원(대표 정희원)
- 위탁기간 : 2011. 1. 1 ~ 2012. 12. 31(2년간)

### (2) 주요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2년 (2013. 1. 1 ~ 2014. 12. 31)
- 위탁업무
  - 치매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생성
  - 치매관리사업 지침 개발 및 치매센터 종사자 인력 전문교육
  - 치매검진, 치료, 재활 등의 프로그램 표준화 및 추가개발 보급
  - 사업평가 도구개발, 연구개발 및 치매종합정보 시스템 운영 등
- 소요예산 : 612,877천원 (2012년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### 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김태호)

#### 가. 위탁의 근거

- 서울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치매센터의 위탁근거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, 「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 제1항을 제시하고 있으나, 일단 서울시 치매센터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상의 “사회복지시설”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며, 이를 차치하더라도 2012년 1월 5일 공포된 「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4조 제1항에 “서울특별시장은 치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의료기관, 보건의료 관련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.”고 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이상, 굳이 해석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또는 「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그 근거를 찾을 필요는 없다고 봄.
- 물론 「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정 이전에는, 이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근거가 없어서, ‘서울시 치매센터’ 위탁운영의 주요 근거로 「지역보건법」 제24조 및 「동법시행령」 제22조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나<sup>1)</sup> 동 조례가 시행중인 현재는 위탁운영의 근거를 동 조례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.

#### 나. 위탁사무의 내용과 민간위탁 지속대상인지 여부

- 현재 서울시 치매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위탁사무는,  
‘치매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생성’

1) 「지역보건법」 제24조 및 「동법시행령」 제22조는 보건소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, ‘서울시 치매센터’ 위탁운영에 직접 관계된 규정은 아님.

- ‘치매관리사업 지침 개발 및 치매센터 종사자 인력 전문교육’  
 ‘치매검진, 치료, 재활 등의 프로그램 표준화 및 추가개발 보급’  
 ‘사업평가 도구개발, 연구개발 및 치매종합정보 시스템 운영’등이며,
- 상기 사무의 전문성과 포괄성을 고려할 때 외부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효율적이며,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치매지원 센터와의 네트워크를 고려할 경우에도 시가 직접운영하기 보다는 외부단체·기관에 서울시 치매센터를 위탁운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.

#### 다. 기타 살펴볼 점

- 서울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의 민간위탁 추진현황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치매센터는 서울대학병원이 수탁을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, 위탁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(3차)라고 나와 있음.
  - 그런데 현재 「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부칙 제2조를 보면 “이 조례의 공포일 현재 서울특별시 치매센터를 수탁받아 운영 중인 기관의 위탁기간은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
  - 동 조례 공포일인 2012년 1월 5일 현재 수탁운영 중인 서울대학병원의 위탁기간의 종기는 동 조례 공포일로부터 3년 뒤인 2015년 1월 5일이 됨. 이러한 위탁기간의 연장은 조례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위탁 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가 없는 것임(‘재위탁 계약’이 아닌 ‘계약기간의 변경’으로 가능함).
- 따라서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재위탁에 관한 민간위탁 지속여부의 동의를 구하는 금번 동의안은 본래부터 제출할 필요가 없는 안전이라고 보여짐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 요지 : 없 음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 (재석위원 전원일치)

(※ 부대의견 : 「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부칙 제2조에 따라 현재 수탁 중인 서울대학교 병원에 대한 위탁기간이 2015년 1월 5일까지로 변경되었으므로,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본 동의안은 처음부터 제출할 필요가 없는 안건임.)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#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85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2년 6월 8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치매센터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로서
- 나. 민간 의료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센터 개요

- 시설명 : 서울특별시 치매센터(2006. 12. 20)
- 소재지 :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445번지(4층)
- 시설규모 : 239.64㎡
- 위탁법인 : 서울대학교 병원(대표 정희원)
- 위탁기간 : 2011. 1. 1 ~ 2012. 12. 31(2년간)

### 나.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2년(2013. 1. 1 ~ 2014. 12. 31)
- 위탁업무
  - 치매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생성

- 치매관리사업 지침 개발 및 치매센터 종사자 인력 전문교육
- 치매검진, 치료, 재활 등의 프로그램 표준화 및 추가개발 보급
- 사업평가 도구개발, 연구개발 및 치매종합정보 시스템 운영 등
- 소요예산 : 612,877천원 (2012년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#### 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 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
  -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
  -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1항 및 제6조 제1호
- 민간위탁 추진현황
  - 1차 : 2007. 1. 2 ~ 2008. 12. 31(2년, 서울대학교병원)
  - 2차 : 2009. 1. 1 ~ 2010. 12. 31(2년, 서울대학교병원)
  - 3차 : 2011. 1. 1 ~ 2012. 12. 31(2년, 서울대학교병원)

#### 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치매관리사업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참여와 효율적인 기술지원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전문의료기관의 노하우가 필요함
- 따라서, 치매관리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전문의료기관에 위탁운영이 타당함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제5항
  -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(시설의 위탁) 제2항
  - ②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제1항
  -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제1항 제3호
  -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   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1호
  - 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기타사항 : 해당없음